

제2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1. 3. 22.(월)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동의안 2021년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시니어클럽 지정 권한이 경기도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남양주시니어클럽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추진에 관해 남양주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동의안을 제출

3. 주요내용

○ 대상시설

- 1) 시설명 : 남양주시니어클럽
- 2) 위치 :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79
- 3) 시설규모

가) 사무실 : 진건읍 소재 지상 3층 중 2개층 사용(연면적 474.12㎡)

나) 일자리 사업장 : 화도읍 소재 지상 1층(연면적 289.26㎡)

○ 위탁개요

-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2) 위탁내용 : 남양주시니어클럽 관리·운영
 - 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 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

다.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라. 그밖에 남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후 심사 선정

4) 운영비 : 연 293백만원(도 29백만원, 시 264백만원)

※ '21년 기준이며 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노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진건읍 진건오남로 379에 위치한 남양주시니클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기도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고, 이후 해당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어 우리시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대한불교조계종이 계속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말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향후에는 관계 법령 취지에 맞게 사전 이행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20년 기준 1,300여개 노인 일자리를 보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남양주시니어클럽 현황 1부.

시설개요

- 위 치 : 진건읍 진건오남로 379
- 시설규모 : 부지 475 m²/연면적 474.12m²(지상 3층)
(시 소유건물 무상사용 : 2013년~)
- 설 립 일 : 2009. 5. 1.

운영현황

- 운 영 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시설장 이수진)
-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이 용 자 : 90명(일)
- 종사자수 : 12명 ※전담인력 8명(계약직) 포함
- 층별현황

1층	노인일자리 사업장(분식카페), 사무실, 회의실
2층	당구장, 탁구장
3층	교육실, 사무실

- 운 영 비 : 293,000천원(운영보조금)
- 주요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0+교육센터, 시니어 취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중·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비용의 부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 7. 13., 2011. 4. 7.>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